

한경훈 / 3월 / 기초GS+ / 5회										
반구분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실강+실영상반	515581	22	14	0	0	36	1	1.28%	5	78
실강+실영상반	514114	21	14	0	0	35	2	2.56%	5	
실강+실영상반	515457	23	12	0	0	35	2	2.56%	5	
실강+실영상반	515489	22	13	0	0	35	2	2.56%	5	
실강+실영상반	515515	20	15	0	0	35	2	2.56%	5	
실강+실영상반	515393	21	13	0	0	34	6	7.69%	5	
실강+실영상반	515621	21	13	0	0	34	6	7.69%	5	
실강+실영상반	515613	21	12	0	0	33	8	10.26%	5	
실강+실영상반	515998	20	13	0	0	33	8	10.26%	4	
실강+실영상반	516087	22	11	0	0	33	8	10.26%	4	
실강+실영상반	516188	20	12	0	0	32	11	14.10%	5	
실강+실영상반	515612	18	14	0	0	32	11	14.10%	5	
실강+실영상반	515660	20	11	0	0	31	13	16.67%	5	
실강+실영상반	516203	20	10	0	0	30	14	17.95%	4	
실강+실영상반	515370	18	12	0	0	30	14	17.95%	5	
실강+실영상반	515518	19	11	0	0	30	14	17.95%	5	
실강+실영상반	515585	19	11	0	0	30	14	17.95%	4	
실강+실영상반	515601	21	8	0	0	29	18	23.08%	5	
실강+실영상반	515631	23	6	0	0	29	18	23.08%	5	
실강+실영상반	515913	17	12	0	0	29	18	23.08%	5	
실강+실영상반	516191	22	6	0	0	28	21	26.92%	5	
실강+실영상반	515429	17	11	0	0	28	21	26.92%	5	
실강+실영상반	515440	21	7	0	0	28	21	26.92%	5	
실강+실영상반	514532	19	8	0	0	27	24	30.77%	4	
실강+실영상반	515446	19	8	0	0	27	24	30.77%	4	
실강+실영상반	515479	17	10	0	0	27	24	30.77%	5	
실강+실영상반	515491	21	6	0	0	27	24	30.77%	5	
실강+실영상반	515929	17	10	0	0	27	24	30.77%	5	
실강+실영상반	515456	19	7	0	0	26	29	37.18%	5	
실강+실영상반	515461	20	6	0	0	26	29	37.18%	4	
실강+실영상반	515462	22	4	0	0	26	29	37.18%	4	
실강+실영상반	515490	22	4	0	0	26	29	37.18%	5	
실강+실영상반	515682	20	6	0	0	26	29	37.18%	5	
실강+실영상반	515369	21	4	0	0	25	34	43.59%	5	
실강+실영상반	515567	20	5	0	0	25	34	43.59%	5	
실강+실영상반	515588	21	4	0	0	25	34	43.59%	5	
실강+실영상반	515675	13	12	0	0	25	34	43.59%	5	
실강+실영상반	515385	19	5	0	0	24	38	48.72%	4	
실강+실영상반	515450	19	5	0	0	24	38	48.72%	4	
실강+실영상반	515459	19	5	0	0	24	38	48.72%	4	
실강+실영상반	515482	16	8	0	0	24	38	48.72%	6	
실강+실영상반	515580	17	7	0	0	24	38	48.72%	5	
실강+실영상반	515583	14	10	0	0	24	38	48.72%	4	
실강+실영상반	515586	16	8	0	0	24	38	48.72%	5	
실강+실영상반	515615	21	3	0	0	24	38	48.72%	5	
실강+실영상반	516119	21	3	0	0	24	38	48.72%	5	
실강+실영상반	515366	21	2	0	0	23	47	60.26%	6	
실강+실영상반	515577	15	8	0	0	23	47	60.26%	6	
실강+실영상반	515657	16	7	0	0	23	47	60.26%	4	
실강+실영상반	515729	19	4	0	0	23	47	60.26%	5	
실강+실영상반	516103	19	4	0	0	23	47	60.26%	5	
실강+실영상반	515584	18	4	0	0	22	52	66.67%	5	
실강+실영상반	515844	22	0	0	0	22	52	66.67%	5	
실강+실영상반	515513	17	4	0	0	21	54	69.23%	6	
실강+실영상반	515423	16	5	0	0	21	54	69.23%	5	
실강+실영상반	515447	15	6	0	0	21	54	69.23%	5	
실강+실영상반	515492	10	11	0	0	21	54	69.23%	5	
실강+실영상반	515495	14	7	0	0	21	54	69.23%	5	
실강+실영상반	516036	18	3	0	0	21	54	69.23%	5	
실강+실영상반	516077	17	4	0	0	21	54	69.23%	4	
실강+실영상반	516944	17	3	0	0	20	61	78.21%	4	
실강+실영상반	515596	12	8	0	0	20	61	78.21%	4	
실강+실영상반	516235	11	8	0	0	19	63	80.77%	4	
실강+실영상반	515468	12	7	0	0	19	63	80.77%	5	
실강+실영상반	515520	19	0	0	0	19	63	80.77%	4	
실강+실영상반	515665	19	0	0	0	19	63	80.77%	4	
실강+실영상반	516170	17	2	0	0	19	63	80.77%	5	
실강+실영상반	515625	15	4	0	0	19	63	80.77%	5	
실강+실영상반	516189	16	2	0	0	18	69	88.46%	5	

실강+실영상반	515355	12	6	0	0	18	69	88.46%	4
실강+실영상반	515444	18	0	0	0	18	69	88.46%	5
실강+실영상반	515466	17	0	0	0	17	72	92.31%	4
실강+실영상반	515483	15	2	0	0	17	72	92.31%	5
실강+실영상반	515578	17	0	0	0	17	72	92.31%	6
실강+실영상반	515472	15	0	0	0	15	75	96.15%	5
실강+실영상반	515594	13	0	0	0	13	76	97.44%	4
실강+실영상반	515690	11	0	0	0	11	77	98.72%	4
실강+실영상반	515381	5	0	0	0	5	78	100.00%	4
실강+실영상반	515192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734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388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409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448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463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469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487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602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640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645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652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669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733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736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5982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6047	0	0	0	0	0	79	101.28%	#DIV/0!
실강+실영상반	516078	0	0	0	0	0	79	101.28%	#DIV/0!

<b>한경훈/3월/기초GS Plus/5회/1번</b>	<b>채점자</b> <b>김시연</b>
<b>1. 전반적인 총평</b>	
<p>기술적 표장에 대한 리딩케이스들이었고, 설문 또한 까다롭지 않아서 저번 회차에 비해, 다들 분량 면에서 훨씬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다만, 아직 배점에 따른 분량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완벽한 답안은 어렵게도 없었습니다. 1회차 때는 무엇을 쓸지 모르겠어서 답안이 비어 있던 느낌이라면, 이번 문제에서는 쓰라는 것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남아서 다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느낌이었습니다.</p>	
<p>따라서, 사안 포섭을 판례에 입각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해주신 답안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	
<p><b>(1) 설문 1</b></p>	
<p>설문에 직접적으로 ①규정 ②취지 ③주체적 기준 ④시기적 기준 ⑤그 외 판단기준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설명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당연히 다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목차를 따로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기본적인 문제였기에, 다들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다만, 주체적 기준 -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서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을 놓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p>	
<p>기술적 표장 판단과 관련된 판례 기재 시 점수 부여하였습니다.</p>	
<p>또한, 너무 많이 작성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해당 설문에서 묻는 바만, 정해진 배점만큼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p>	

## (2) 설문 2

적을 판례가 딱히 없어서 사안 포섭만 작성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설문 1에 적을 내용을 적당히 분배하여 배점에 따른 분량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 포섭만으로 6점을 채워야 하기에, 최대한 판례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 (3) 설문 3

외국에서의 등록례에 구속되는지 판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 등록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판례를 적어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둘 다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보이는 경우 외국과 관련된 판례는 필수적으로 떼 올리셔야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다수 등록 사정 판례 또한 언급해주는 식으로 작성한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등록 밤을 수 있는 방법 중, 상표에 본질적 식별력을 부여하는 등의 보정행위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불가하다는 점을 언급해주신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정을 언급 해주셨지만, 요지변경이라는 점은 간과하셨습니다.

## (4) 설문 4

워낙 유명한 사안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다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일 수록 사안 포섭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답안 인상이 좋아집니다.

## 3. 소결

전반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논점 놓치지 않기, 목차 구성 깔끔하게 하기, 사안 포섭 구체적으로 하기에 따라 점수가 갈릴 수 있음에 유의해 주세요.

또한, 아직 시간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초gs에서 시간과 내용을 둘 다 잡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반 회차이니, 답안을 어떻게든 완성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한경훈/3월/기초GS Plus/5회/2번</b>	<b>채점자</b> <b>김시연</b>
<b>1. 전반적인 총평</b>	
<p>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시점과 관련하여 설문 1과 2가 각각 다른 시점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다는 점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목차 구성 또한 이러한 점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게 구성하시면 인상이 좋아집니다. 식별력 취득 시점별로 문제가 되는 논점들을 잘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다만, 아직 내용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이를 캐치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답안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암기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GS 쓰러 오시기 전, 꼭 암기 많이 해주세요.</p>	
<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	
<p><b>(1) 설문 1</b></p> <p>등록 여부 결정시 이전에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에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①사식취 인정되는 상품의 범위가 문제됩니다.</p> <p>그 외 도형상표의 유사판단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②상표의 유사 판단 원칙 ③도형상표의 유사 판단 원칙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동화와 발목양말에 대하여 각각 목차를 따로 빼주어 각각에 대한 유사판단 후 결론을 내려 주신 답안이 깔끔해 보였습니다.</p>	
<p><b>(2) 설문 2</b></p> <p>등록 여부 결정시 이후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입니다.</p> <p>이때 문제되는 논점은 유사 판단 시 식별력 있는 부분을 요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학설, 판례 적어주시면 점수 부여하였습니다.</p> <p>또한, 설문에서 읊이 운동화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묻고 있으므로 굳이 상품과 관련된 판례는 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설문 1에서 다 언급하였으므로 반복x, 답안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p> <p>또, 효력제한에 관하여 기재해 주신 분들도 일정 부분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 3. 소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주요 논점이고, 특히 전원합의체(2011후3698)판결의 경우 사안 그대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①문제가 되는 이유 ②학설 ③판례 ④검토 ⑤사안적용 순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암기해 두시고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두문자 길게 따서 외워둔 전원합의체/대법원 판례가 출제되면, 판례만으로 6~7줄씩 적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1,2점은 안정적으로 받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편하게 나머지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답안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서, 판례를 쓰실 때 그냥 쪽 나열하시거나 사안 포섭에 녹여서 한 번에 작성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례는 꼭 '판례' 혹은 한자로 '判例'를 써주셔서 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한자로 쓰시는 것이 안정적인 점 수 획득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3회차에 비해 다들 훨씬 더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였습니다.

[문제-1]

## I 설문(1)

1. 기술적 표장의 등록요건 - 33조 1항 3호

## (1) 의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2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 취지

성질표시표장은 일반적으로 자타상표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있고, 설명 자타상표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2 상품을 거래하는 대 필요한 표시임으로 특별한 이미지 특징을 부여하는 것은 이유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2. 기술적 표장의 주체별 시기별 기준.

## (1) 주체별 기준

2 상품의 일반수요자들이 성질표시표장임을 직감할 수 있는지를 '직접 평가' 기준으로 한다.

## (2) 시기별 기준

출원상표의 등록여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거절결정 낼복심 판이 청구되었다면 2 상경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기술적 표장의 판단방법

## (1) 2 상품의 기술적

## (1) 2 상품의 기술적 기술적 표장



출원상표가 기술성을 띠는지는 상표가 지니는 성질,

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적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한다.

(2) 보통으로 표시한 방법.

상표를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3) 만으로 된 상표.

성질표시포함에 따른 복불이 결합해서는 안된다.

## 2. 설문(2)

1. ~~상표 표시 포함일을~~ 암시·강조하는 경우.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과·용도·산지 등을 암시·  
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일반~~ 상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없다면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 2. 차단.

(1) 상표에서 "점마"의 식별력 여부.

2. 결합상표에서 식별력 판단기준

결합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3. 사용

주의 상표는 "알바" 부분과 "천국" 부분이 결합한 상표를 수 있는데, "알바" 부분은 아르바이트의 약칭으로서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단기로 일하는 것 을 의미하므로, 자영서비스인 '직업소개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 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천국' 부분은, 하느님이나 신들이 있다는 이상세계를 의미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뜻한다. ~~는데,~~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서비스 ~~짜고~~ 결합 ~~수~~ 결합상표를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는 전제를 해석 ~~보아~~ 판단하는데, 알바천국은 전제로 보아 일반 수요자들에게 2 성격을 암시·강조하는 표장에 불과하고, 2 성질을 지각시킨다는 보기 어렵다.

5

## 4. 결론

주의 ~~상표는~~ 자영서비스의 관계에서 상표로서 표장이 아니므로 식별력이 있어 등록발을 주었다.

## Ⅱ. 설문(3)

1. 식별력 ~~과~~ 지역적 기준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외국어의 다수 등록되었다는 사정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 2. 결합상표에서 부기적, 부수적 별



결합상표에 식별력 있는 일부 구성이 결합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부가적, 부수적 부분에 불과하거나 전체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성질표시장인을 인식할 수 있다면 예전히 가능적 표장에 해당한다.

### 3. 사안

#### (1) 2의 주장이 타당하지 여부.

① 2의 상표는 "안경" 부분과 "나라" 부분이 결합한 상표이다. 2의 상표에서 "안경" 부분은 지정서비스인 "안경판매대행업", "안경판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 부분은 "국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일반수요자가 구체적인 장소로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② 2의 상표는 결합상표이므로 전체를 해석해 판斷하면 예상 수요자들에게 성질표시장인이 각각될 것이므로 식별력이 있다. 설명 2의 주장한 것처럼 "나라" 부분이 식별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상표 전체로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따라서 2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2의 상표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어 등록될 수 있다

#### (2) 2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2의 상표는 식별력이 있으므로 현재 계류장의 출원으로는 등록여부 결정사를 기준으로

등록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출원을 취소한 후,

오랜 기간 사용하여 2003. 2월 5일의 식별력을 획득한 뒤  
 재출원하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규정을 부가하여 상표  
 원래에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재출원하여

#### (4) 丙의 상표 등록 가능성.

##### 1. 도안화

기술적용자 표장의 도안화된 정도가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할정도로 문자인식력을 암호  
 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특별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보통구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 적당하지  
 않아, 기술적 표장이 아님.

##### 2. 사안

1. 丙이 출원한 상표는 'Jazz'라는 영어상호를 평가  
 제로 표기함에 있어 첫글자는 언뜻보면 'ㄱ'으로 보이거나,  
 2 아래 흰선과 겹침하여 'ㅈ'나 숫자 '2'로 보이고.  
 마지막 글자는 '3'으로 보일정도로 변형되어 있다. 따라서  
 도안화된 정도가 문자인식력을 암호한 정도에 이르러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표시 표장을 인식할수 없다.

##### 3. 결론

丙의 상표는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표시 표장을 인식할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되어 기술적 표장이 아니므로 식별력이  
 있어 등록받을 수 있다.



## [문제→]

1.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등록전에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의 구성부분이 식별력이 있거나 미량한 경우에도 사용상품에 오랜기간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출판표시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식별력 있는 표~~ 사용상품에 통하여 식별력 있는 요법 보아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되지도 않은 상품에까지 식별력 있는 요법이 되는 전제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도형상표의 유사판단.

- (1) 도형상표 유사판단 기준.

~~도형상표는~~ 유관의 지배적 인상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 (2) 도형간 결합상표의 분리판정

~~도형간 결합상표는~~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하나의 도형이 갖는 외관, 호칭, 관념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사안.

- (1) ① 甲 상표는 등록여부 결정시 전에 '운동화'에 관하여 특정인의 출판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은 사용상표 혹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품에만 식별력 있는, ~~요법~~ 보아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2의 상표는

'비물양말'에 ~~운동과 운동화에~~ 관하여 표시하여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비물 ~~운동화~~"에 관하여 사용된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치명한 부분은, 동일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X에 부기적인 도형이 포함한 Y 상표와 X 상표의 일반인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다.

(3) "비물 ~~양말~~"에 사용된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치명한 부분은 유사성을 판정시 식별력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양 상표를 관계상은 하면 X 부분은 식별력이 있고, X에 부기적인 도형을 포함한 Y도 식별력이 있으므로 양 상표는 충돌 유사성이 ~~있어~~ 비유사하다.

## 2. 설문(2)

1.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등록 후에 식별력을 치명한 경우.

(1) 상표 유사판단.

상표는 일반 - 호칭 관계를 전제로 개별적 이격성을 두고 있어 일반 수용자들에게 충돌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로 유사판단한다.

(2) 식별력의 상대성 - 운동성, 패션성.

상표의 유사여부 평가는에서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은

증명한 고지로인해, 상병과는 상표의 권리, 상호의 권리,  
기대실험등에 이어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유익의  
권이다. 따라서 상표의 상병과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그 상병과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3) 증명자에 상병과를 침해한 경우.

상병과 등록전에는 상병과가 없거나 비슷하거나  
등록후에 등록전의 충치로시로 상병과였다면 그 유사여부  
판단시점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2. 사용

상표와 그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은 권리범위  
확인 시장에서는 신경시 이므로 그 시점에 상표는  
사용에 의한 상병과를 침해했으므로 상표와 그 상표는  
사용상에 "동등화"에 대해서 X부분을 상병과 있는  
유복로비아 유사여부로 판단하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

※※※,※※※※※

## (문제) 1]

## I. 상물 (1)

1. ~~상품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위 및 키즈~~

(1) 의의

그 상품이 선지, 풍선, 홍보, 표도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그 상품은 상별력이 없어 등록불을 수 없다.

(2) 원리

자타상용상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특징인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상호를 위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기술적 표장 전반 요건 (例)~~

(1) 상별력 표기

상표가 상별력이 있는지는 그 ~~상표~~ 상품  
 상품의 관계, 상품과의 관계, 기재설정  
 등을 통하여 그간접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체적 표기

상표가 상별력이 있는지는 국내 일반 사용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시기적 기준

상표의 상별력의 유무와 충돌은 그 상품의  
 관계, 상품과의 관계, 기재설정 등에 따라



단지지은 산대장·유동적인 경이으로 상표 우수  
여부를 판정하는 등록여부 결정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4) '보통으로 사용하는 명세상으로 표시'

상표가 전문적이어 일반 사용자에게 특별한  
유의를 들이도록 전문화 된 경우, 보다의  
기술적 의미를 갖게 될 수 없을 정도로 문자의 특색을  
인도화였다면 보통으로 사용하는 명세상으로 표시  
경우를 볼 수 있다.

(5) '만으로 표시'

상표의 구성에 특별적인 부수나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해 그로 인해 특별한 상별성이 아니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

## II 실무 (2)

### 1. 상표 및 상품

무엇든 '알바 친구' 으로 '직업 소개업'을 지정  
서비스로 충분하였다.

### 2. 기술적 표장 인지 여부 (32)

#### (1) 관리 예제

예제는 상품의 주성이 흙, 흙, 흙, 흙 등을  
암시하며 강조하더라도 일반 사용자가 인지적으로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풍선, 화살, 유통망  
직접 할 수 있는 경우 기술적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로 판매 있다.

## (2) 사안의 경우

① '알바'의 경우 '아르바이트'의 약칭으로서 생  
활은 일자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여 사람  
서비스와의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친구'는 친구이나 신분이 맞대는 애인 세계, 가족들  
과 동반한 곳 '동'을 의미하고 '친'은 서비스  
제공장소로 같은 친밀적 의미를 가지므로 친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시키자는 않는다.

③ '알바친구' 전체 품질 표준에서 판별할 경우  
알바를 하기 위한 '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  
점 의미를 전달할 수는 있다 친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대로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甲상표의 경우 지정서비스와의 관계에서 당시·경로  
되는 내용이 엿기는 하나 친밀적으로 의미를 제공시키지  
않는다.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어 등록  
받을 수 있다.

+



## Ⅴ. 심문(3)

### 1. C 사용상표 및 상품

C은 '안경나라'라는 상품을 '안경판매 대행업' '안경 판매 알선업'을 차명사례로 하여 등록하였다.

### 2. C의 주장

~~C은 미국에서 '나라'를 의미하는 "COUNTRY"~~  
가 표기된 상자가 다른 등록을 하여온 사실이 있으므로  
~~C의 등록도 식별력이 있으므로 주장을 취消하라.~~

### 3. C 주장의 타당여부 (속)

#### (1) 관련 예외

예외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 여부로 기준을  
제1 항에 등록된 고품질 상표, 등록된 상표권자들의 수 등  
광장과 주 품으로 등록된 고품질 상표의  
수, 상표권자의 수, 해당 상표 유형의 분류적인  
식별력, 상품과 상품간의 관계, 국가상 특성인  
여기 특징이라는 것이 뛰어넘은지 여부 등을 종종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 (2) 타당성 검토

~~미국에서 '나라'를 의미하는 "COUNTRY"라는  
마크의 다른 등록된 사정을 되려 식별력을 지체  
하는 요인이 C 상표에서 해당 마크의 식별력이  
무력하고 판단되므로 C 주장을 무승부다~~



## (3) 소결

그 주장은 이미 식별력 강해화로 인해서  
폐기된다.

## 4. 등록불가 원인 방법

## (1) 의견서 제출 - 주체적 기준 부족

그는 해당 부분의 식별력 판단 시 국내 사용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 상호간의 관계, 기제 설정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斷하여야 하는 바. 이중에 특히 등록된 사용방법으로 거절되면 안될하고 아울러 볼 수 있다

## (2) 키워드 - 사용에 의한 식별력

그는 위 표장을 2019년부터 안경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를 위하여 온 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치밀하게 읽을 조망하는 서류가 되게) 사용방법 제3조로 제2항에 따라 등록 가능하고 주장할 수 있다.

## IV 실문 (4)

## 1. 韩文 표 및 사용

한국어 표를 도안화 된 글자 "자오"를  
 대비하기 위한 등장 파일'을 기재하여  
 조언하였다.

## 2. 예술작품장 해석여부 (속)

### (1)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풀어 여부 (解例)

解例 는 음상평가 도안과 상관이 그 정도가 일반 사용자가 직감할 수 있을 만큼 도안화되어 특별한 의미를 둘게 되어 문가의 기술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문가인식력을 양보한 경우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풀어진 것이 아니라 친 바 있다.

### (2) 사례의 경우

제 표장은 "Jazz"라는 영어단어를 철기체로 표시할 때 "J"가 "ㄱ"으로 보이거나 "Z"가 "ㅋ"로 보이고 마지막 글자는 "ㅌ"으로 보일 정도로 변형되어 일반 사용자가 직감하기 어려우며 그 기술적 어려움 상상을 정도로 도안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결론

제 표장은 그 의미를 경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안화되어 기술적 품자에 깨닫되지 않는 바 등록 가능하다.

등록



# C문제 2)

## I. 실문 (1)

### 1. 상품 유사 판단 기준 (似似)

似似는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은 상품의 원산, 제조, 판매  
장소, 제조일, 출시일 등 판권자의 일반적 특징  
가 상품에 대하여 가진 직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출처의 예상 특성이 맞지 않아  
판권자와 다른지 판다.

### 2. 유통 판단 (似似)

似似는 상품과의 차별성이 일반 사용자에게  
인식이나 기억, 연상 등을 통해 쉽게 강조되어  
판권자의 출처를 기울여 이해하고 보면, 즉 판권자  
있는 경우 판권자는 판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요구한 가진 직관적인 판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마 있다.

### 3. 특별한 특징으로 인한 유통 판단 기준 (似似)

似似는 특별성이 있거나 미약한 특성이 그 종류  
인 특성 자체로 인식되는 특성인 경우 그 내용을  
상품에 대한 출처로 인식된 경우 그 내용을  
요구로 보아 상품의 유사 여부가 가능하다고  
한 마 있다. 다만 아래에서도 출처로 판권자는  
판권은 그 사용 상품에 판권은 가지지 않거나

앞을 살피에 까지는 표지로 보아 유사여부 판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4. 특수표 X 와 C 조합상품 X 유사여부

① 특수표 X의 등록여부(경지) 판정(유사여부)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출판을 허가하는 기관을 선택하기

한 경우 이를 표지로 보아 유사판정이 가능하며

C의 조합상품은 특수표 X의 출판여부 판정되어 있는 허가

기관의 판정에 인수이 유사여부로 양 상품은 유사  
하다.

② 다만 C 상품 ~~제작상품~~ ~~별도 양말~~에 까지

여기 상품과 유사로써 판권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 양말'에 대해서는 유사여부로 판 ~~수~~ 없다.

good

#### II. 쟁점 (2)

##### 1. 상표등록 심사법적 관점 '뉴뱅크스' 判例

###### (1) 관리기관 원칙

상표의 유사여부 판정은 그 관리 관계에서의 관리·점검  
관念을 비교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2) 심사법적 관점 · 유동성

상표의 심사법적 판정에 있어서는 그 특약과 유동성이  
중요하며 특히 상품의 사용상태, 기호, 광고과  
연계, 사용상적, 거래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정에

여기 달라지는 상대적 유익성이 있어 그  
상품과 유익한 산표 유사여부 판정시에 판단하  
여야 한다.

### (3) 심僻적 판정시

여기서 A표유사여부판정시인 등록여부 경지나  
권리영역 확인상태 경우 경지 등은 기준으로  
심僻적 유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우상표의 심僻적 유익 (직접)

② 상품과 유사여부 판정 A를 기준으로 판정  
우상표는 '운동복에 새끼' 상표에 관한 출처를  
조사하는 것을 유익할 수 있게 된 데 심僻적을  
가지고 있어 유사여부판정시 A를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 3. 우과 ② 산표 유사여부 판정 (직접)

④ 상표는 심僻적을 가지고 A를 기준으로 작용하여  
유사여부판정에 대상이 되는 데 ② 상표와  
유사하다

— 이 하 여 백 —

내장 구조(장치) 유사여부